

공 고

2022.3.1.자 중등 초빙 및 공모교사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초빙교원)제2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7(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2. 초빙교사 및 공모교사 초빙 기간

- 2022. 3. 1. ~ 2028. 2. 28.(6년)

3. 학교별 응모 영역 및 응모 요건

가. 초빙교사제

초빙 학교	초빙 교과	초빙 인원	초빙교사 응모요건
나포중	과학	1명	나포면의 지역거점 중학교로서 나포초와 협업으로 마을학교 및 혁신학교, 혁신벨트사업을 충실히 지원해 갈 수 있고 학생들과 교육에 대해 공감하는 교사

나. 공모교사제

공모 학교	공모 교과	공모 인원	공모교사 응모요건
옥구중	도덕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에 구축에 열의가 있고 혁신 더하기 학교의 교육철학에 함께할 수 있는 자 ○ 학교 추진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수업 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동참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
	체육	1명	
	영어	1명	

4. 임용 요건

가. 공모(초빙)교사 공통 적용 사항

- 1) 우리교육청 소속 공립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정규 교사(비교과 교사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 2) 응모서류 제출일 현재,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국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제외한다.
- 3) 현임교, 현임지역 만기자는 각각 현임교, 현임지역 공모교사에 지원할 수 없다. 단,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지원이 가능하며 공모학교 근무시작을 지역 근무 연한의 시점으로 한다.

나. 초빙교사 대상자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 학교 교사 초빙 요구 조건에 적합한 자로서 정기전보 대상자 중 순환전보 대상자(현임교, 현임지역), 폐교 및 학급감축, 정원감축으로 인한 전보대상자로 한다.
- 2) 구체적인 초빙교사 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공모교사 대상자

- 1) 혁신학교: 현임교에 3년 이상 근무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 2) 혁신*학교,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임교에 2년 이상 근무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 3) 구체적인 공모교사 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사공모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5. 초빙(공모)교사의 인사

가. 초빙(공모)교사제 실시는 매년 정기전보 시 실시한다.

나. 초빙교사는 현임교에서 순환전보(감축 포함) 대상이 되어 교사 초빙에 응모할 때, 현임교가 1, 2급지인 경우 3, 4, 5급지 학교에만 응모할 수 있다.

다. 초빙(공모)교사는 초빙(공모)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초빙(공모)교사가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동일교에서 3년 이상 근속자를 순환전보대상자로 간주하여 전보하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교육감)에게 전보 승인 요청(사유서, 학교장 확인서, 증빙자료 첨부)

〈근거자료〉 교육공무원 인사실무(교육부 교원정책과, 2016)

II. 교사초빙제 4. 초빙교사의 인사

- 라. 초빙교사는 초빙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없음. 다만, 초빙교사가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하거나, 초빙교사 임용권자(교육감) 직권으로 전보를 시킬 수 있음
- 사. 초빙교사 임용권자(교육감)는 학교의 귀책 사유로 초빙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학교를 일정기간 초빙 대상학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초빙교사의 귀책 사유로 초빙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해 향후 초빙교사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라. 시·도간 교류는 동일교 2년 이상 근속자도 지원 가능.
- 마.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에서 순환전보 대상자와 초빙기간이 만료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연속하여 재초빙(공모) 할 수 있다.
 - ※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이외의 동일교 재초빙은 연속하지 않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
- 바. 초빙(공모)교사의 근무 기간은 지역 근무 연한에 포함한다.
- 사. 절차상 하자 및 심사의 공정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용권자는 초빙(공모)교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아. 초빙(공모)교사 희망자는 1개교에만 '초빙(공모)교사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1인이 2개교 이상 중복 지원 시 초빙 임용을 취소함)
- 자. 교사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공모인원이 초빙교사의 인원보다 적을 경우 잔여인원에 한하여 별도로 초빙교사제를 실시 할 수 있다.
- 차. 중학교의 경우 '전출 동의 요구' 및 '전출 동의 회신' 공문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행한다.(8쪽의 '동의 요청 및 회신 절차' 참고)
- 카. 초빙(공모)교사로 전입한 후 현임교 근무기간중에는 파견, 전직, 기타 선발 전형 응시 등이 제한되며, 휴직 기간은 초빙(공모)교사의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6. 초빙(공모)교사의 응시제한 기준

- 가. 징계 처분을 받고 말소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 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으로 경고를 받은 자
- 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 라. 초빙(공모), 학교장 전입요청 교사로서 기간(6년) 만료 전 전보를 희망한 경우

7. 임용 절차

가. 초빙교사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개최	교사 초빙 자문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초빙교사 요건 등 심의
▼	
교사 초빙 계획서 제출	학교→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교사 초빙 공고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해당기관 홈페이지
▼	
초빙교사 응모자 서류 접수 및 송부	응모자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초빙교사제 실시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초빙교사 응모자 심사
▼	
학교장에게 통보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장
▼	
초빙교사 임용후보자 추천	초빙교사제 실시학교 학교장 → 교원인사과
▼	
초빙교사 임용	초빙교사 임용권자(교육감)

- 1) 학교장은 교사 초빙 여부 및 초빙 요건을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교육과정, 기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사 초빙 여부를 결정한다.
- 2) 학교장은 초빙교사 공고 시 초빙 목적, 초빙 기간, 초빙 과목, 소지자격증 구분, 초빙 인원, 연령 등 초빙 요건을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통해 공고한다.
 - * 초빙교사 공모계획서를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하고,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공고 안내를 하고 있으니 학교는 초빙계획서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단위학교로 공문발송은 자제하기 바람.
- 3) 초빙 공고는 1회로 하되,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1차 공고 시 응모자가 없을 경우 초빙교사제를 취소한다.).
- 4) 초빙교사를 희망하는 교사는 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 관련서류(관련 증빙자료 포함) 등을 갖추어 지원한다.
- 5) 학교운영위원회는 초빙교사 임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적격자를 선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한다.
- 6) 학교장이 추천한 초빙교사 임용후보자라 하더라도 학급감축 등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 초빙교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나. 교사공모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개최	교사 공모 자문
▼	
교사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공모교사 요건 등 심의
▼	
교사 공모 계획서 제출	학교→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도교육청
▼	
교사 공모 공고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해당기관 홈페이지
▼	
공모교사 응모자 서류 접수	응모자 → 교사공모제 실시학교
▼	
교사공모심사위원회 심사	공모교사 응모자 심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1.3.1.자 신설)	교사공모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공모교사 임용후보자 적격 여부 심의
▼	
학교장에게 통보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장
▼	
공모교사 전보 동의 요청	공모교사제 실시학교 → 공모교사 임용후보자 소속 학교
▼	
공모교사 임용후보자 추천	공모교사제 실시학교 → 교원인사과
▼	
공모교사 임용	공모교사 임용권자(교육감)

- 1) 교사공모심사위원회는 혁신학교에 근무할 교사의 교육철학과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교사공모제 실시안을 마련하고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2) 교사공모제 공고 시 응시자가 없을 때에는 교사초빙제로 대신 할 수 있다.
- 3) 교사공모심사위원회는 현직 교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 4) 교사공모심사위원회는 공모교사 응모자를 심사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공모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공모교사 임용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적격자를 임용권자에게 추천한다.
- 5) 학교장이 추천한 공모교사 임용후보자라 하더라도 학급감축 등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 공모교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8. 초빙(공모)교사 응모자 제출서류

- ✓ 초빙교사 응모 서류 제출 장소: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 공모교사 응모 서류 제출 장소: 해당학교에 제출
- ✓ 제출일: 2021.11.17.(수)까지

가. 초빙(공모)교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NEIS 인사기록 출력물(학교장원본대조필) 1부.

다. 초빙(공모)교사 관련 증빙 서류 1부.

라.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사공모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 서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